

[별표 4](2016.03.09 개정)

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(제7조제2항 관련)

1. 어업용 화물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,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)
2. 어업용 경운기
3. 어업용 트랙터
4. 어업용 크레인(2015.03.13 신설)
5. 패류선별기(2015.03.13 신설)
6. 어망 세척기(2016.03.09 신설)